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사회·경제 현실 속에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있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여 지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주민감사청구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정치·사회가 민주화되고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교류가 갈수록 활발해짐에 따라 더 많은 주민들이 정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에 관한 권리를 보다 많이 보장하고 있고, 그 대상자도 점차 넓히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에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 연령기준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변경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정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